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2. 18(금) 11:00

제23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646,097,999천원(일반 631,642,022천원 특별 14,455,97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정 액			1회추경 (안)	비고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646,097,999	634,091,399	622,601,831	11,489,568	12,006,600	
일반회계		631,642,022	619,635,422	608,145,854	11,489,568	12,006,600	
특별회계		14,455,977	14,455,977	14,455,977	0	0	
	의료급여기금	636,085	636,085	636,085	-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291,400	291,400	291,400	-	-	
	주차장	13,528,492	13,528,492	13,528,492	-	-	

나. 구 예산 규모 및 편성방향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에 따른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이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수납액)	세출결산액 (지출액)	세계잉여금 (금고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772,627	821,251	655,249	166,002	68,656	10,448	83,884
일반회계	760,575	808,853	647,451	161,402	67,961	10,350	83,091
기타특별회계	12,052	12,398	7,798	4,600	695	98	793

※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반납금 수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금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상회복 지원 및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소요 재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예산안 편성 현황은

당초예산은 6,226억 183만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114억 8,956만원과 금회 추경 120억 660만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6,460억 9,799만원임.

다.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추경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간 : 2022. 4. ~ 5. (2개월)
□ 대 상 : 전 구민 (117,595세대 236,682명, '21.12.31 기준)
※ 외국인 중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5,871명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 지원방법 : 선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1)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비고
계	631,642,022	619,635,422	12,006,600	41.85%증
지방세 수입	117,529,982	117,529,982	0	
보통세	117,315,142	117,315,142	0	
지난년도 수입	214,840	214,840	0	
세외수입	35,016,402	35,016,402	0	
경 상 적 세외수입	29,865,878	29,865,878	0	
임 시 적 세외수입	3,315,516	3,315,516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835,008	1,835,008	0	
지방교부세	23,375,000	23,375,000	0	
조정교부금	134,471,483	134,471,483	0	
보 조 금	280,550,022	280,550,022	0	
국고보조금	161,180,821	161,180,821	0	
시·도비보조금	119,369,201	119,369,201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699,133	28,692,533	12,006,600	
순 세 계 잉 여 금	40,699,133	28,692,533	12,006,60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산출근거	최종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추경요구액)
계	12,006,600	0	12,006,6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7,000	0	117,000
1)재난지원금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 2)접수창구 상담원 2,600,000원*4명*1월*10동 2)콜센터 상담원 2,600,000원*5명*1월			
201-01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1)일반수용비 2)홍보물, 현수막, 신청서 등 10,000,000원 1)임차료 2)PC, 복합기, 번호기 등 10,000,000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	0	5,500
1)재난지원금 지원 업무추진 2)구 전담팀 500,000원 2)동 주민센터 500,000원*10동			
207-02 전산개발비	30,000	0	30,000
1)건강돌봄 재난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30,000,000원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1,834,100	0	11,834,100
1)금천 건강돌봄 긴급재난지원금 50,000원*236,682명			

4. 검토 의견

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자치구

○ 서울시 4개구

구분	조례 제정일	조례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한 사례
동작구	2020. 7. 9	없음
노원구	2021. 3. 18.	없음
광진구	2021. 3. 25.	없음
영등포구	2021. 7. 15.	없음

○ 금천구 제정 : 2021. 9. 29(제230회 임시회)

나.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민들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 주민에게 지급된다는 점, 금천구 실정을 감안한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여 불 때 추경안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